"깨끗한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적극 실천"

공공기관 / 환경부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

환 경 보 전 협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계획 수정 알림

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738(2019.4.26.)「질의에 대한 회신(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안내한 「2019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한 일부 수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등급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교육은 기술인력 등록 후 1회 이수로 종료

나. 평가자 최초교육 이수자는 평가사 취득 시 잔여 시간(30시간) 이수로 최초교육 종료

다. 최초교육 시기는 등급 인정일과 관계없이 기술인력 등록일 기준

라. 교육계획 수정(5p)

변경 전	변경 후
최초(보수)교육 이수기한 내 상위등급으로 인정받은 후 변경등록 시 등록일 기준으로 상위등급의 최초교육 대상 및 이수시기 안내	최초(보수)교육 이수기한 내 상위등급으로 인정받더라도 기존 기술인력 등록일 기준으로 이수시기 안내 (교육과정 : 교육일 기준 인정등급의 과정 선택)

붙임 질의에 대한 회신(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환경부 공문 1부. 끝.

환경보전협회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장(환경기업육성팀장), 환경영향평가협회장

사원	이이슬	대리	김재연	환경연수처장	전결 2019.5.16. 박종성

협조자 사원 권민지

시행 환경연수처-817 (2019. 5. 16.) 접수 환경평가과-3334 (2019.05.17.)

우 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 http://www.epa.or.kr

전화번호 02-3406-3131 팩스번호 02-3409-8865 / r / 대국민 공개

환경부

환 경 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자 환경보전협회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1. 귀 협회 환경연수처-481(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등급이 상향(예 : 초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되어 변경등록된 경우 중급 평가자로서 최초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 지 여부

나. 고급 평가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하였다면 최초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이수시기에 맞추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 지 여부

다. 중급 평가자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받기 전에 고급 평가자로 기술등급이 상향되어 변경등록된 경우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중급 평가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인 지 아니면 고급 평가자로 변경등록된 날인 지 여부

3. 회신

질의 "가, 나" 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교육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이며, 보수교육의 시기는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
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이 상향된 경우라면 최초교육은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술등급 상향전 받았던 최초교육의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한편 "나" 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의 이수하여야 할 시간은 70시간이므로 고급 평가자로서 최초교육을 40시간 이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다" 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 교육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중급 평가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입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04/26

서기관 **유병국** 과장 **이승환**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정책과-738 (2019-04-26) 접수 환경연수처-671 (2019.4.2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http://me.go.kr
전화 044-201-7277 전송 044-201-7284 / /공개